

해양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9960
----------	-------

발의연월일 : 2026. 7. 15.

발 의 자 : 송옥주 · 윤준병 · 이성운
문대림 · 임미애 · 안태준
주철현 · 황명선 · 강준현
김재원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재생에너지 생산이 증가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재생에너지 핵심 발전원인 해상풍력의 보급이 확대되고 있음.

현재, 우리나라 연안 및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는 대규모 해상풍력발전단지가 조성되고 있으나, 동 해양시설 주변 해역에 대한 안전관리 등 법적 관리방안이 부재하여 해양사고 발생 우려가 높은 상황임.

현행 법률은 해양교통안전진단, 교통안전특정해역 지정 등 국가 주도의 수역 안전관리 제도를 두고 있으나, 개별 해양시설의 특성과 위험요인을 고려하여 해양시설의 소유자가 선박 통항안전 확보와 해양시설 보호를 위해 안전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미비한 실정임.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상풍력발전시설 인근 해역을 안전수역으로 설정하고,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해당 수역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

· 이행하고, 국가는 이를 점검하도록 하는 안전관리체계를 도입하여 해상교통안전을 확보하고, 해역이용자 간의 조화로운 해역 이용을 지원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신설, 제114조제8호 개정 등).

한편, 현행 안전관리체제에 따른 사업장 인증심사 시 사업장 내 일부 선종에만 해당하는 중대 결함이 발견되어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 현행 법령상 사업장 소속 모든 선박의 선박안전관리증서 효력도 정지되므로 효율적인 안전관리체제 운영을 위해 중대한 결함이 있는 부분이나 선종 또는 안전관리가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만 제재할 필요가 있음.

또한, 사업장의 안전관리적합증서 효력이 정지되는 경우 동일 사업장 소속의 운항 중인 선박의 선박안전관리증서도 즉시 정지되므로 바다에서 운항을 정지해야 하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음

이에,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 정지에 관한 범위, 절차 등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여 안전관리체제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제도운영 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안 제51조제7항 및 제8항 개정).

아울러, 계약상 우월한 지위인 선주나 화주 등이 영업 이익 등을 이유로 선장의 안전에 대한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간섭하는 경우 현행 과태료 금액 상한액을 상향하여 법 이행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선장의 책임과 권한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118조제1항제4호 신설 및 제118조

제4항 삭제).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해상교통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장에 제4절(제12조의2부터 제12조의4까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절 안전수역 설정 및 관리

제12조의2(안전수역 설정 및 관리계획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 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시설 부근 해역에서 선박의 항행안전 확보와 해상풍력발전시설의 보호를 위한 수역(이하 “안전수역”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수역 내 해상풍력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이하 “해상풍력발전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발실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착공하기 3개월 전에 안전수역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수역 및 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제출 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한 자료를 보완하거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걸리는 기간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의 검토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상교통 및 해양시설 안전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의3(관리계획의 이행 등)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12조의2제2항에서 정한 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을 위한 조치와 절차 등은 제60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을 명할 수 있다.

④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안전수역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조치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의4(이행강제금)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달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 주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 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

⑥ 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1조제7항 중 “모든 선박의”를 “선박의”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의 “방법 등에”를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선박 안전관리증서 또는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 정지에 관한 범위, 절차 등에”로 한다.

제114조제8호부터 제24호까지를 각각 제9호부터 제25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8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제118조제1항 중 “제35조를 위반하여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변조·훼손한”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출을 하지 않은 자
2.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자
3. 제35조를 위반하여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변조·훼손한 자
4.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장의 전문적인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한 자

제118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3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 등을 거짓이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2조의2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된 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자
- 제118조제4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시행한다.

1. 제51조제7항·제8항, 제118조제1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
2. 제118조제1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

제2조(관리계획 수립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선정되거나 가동 중인 해상풍력발전시설의 소유자는 이 법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수립·제출하여야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신 설></u>	<u>제4절 안전수역 설정 및 관리</u> <u>제12조의2(안전수역 설정 및 관리계획 수립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해상풍력특별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시설 부근 해역에서 선박의 항행안전 확보와 해상풍력발전시설의 보호를 위한 수역(이하 “안전수역”이라 한다)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설정할 수 있다.</u> <u>② 제1항에 따른 안전수역 내 해상풍력특별법 제2조제7호에 따른 해상풍력발전사업자(이하 “해상풍력발전사업자”라 한다)는 같은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개발 실시계획에 따른 개발사업을 착공하기 3개월 전에 안전수역에 관한 관리계획(이하 “관리계획”이라 한다)을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u>

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안전수역 및 관리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도 그러하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제출받은 경우 제출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출한 자료를 보완하거나 관계기관과의 협의에 걸리는 기간은 통보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관리계획에 대한 검토 결과 적정하다고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합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게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관리계획의 적정성 여부

<신 설>

의 검토를 위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상교통 및 해양시설 안전에 관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의3(관리계획의 이행 등)

①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제12조의2제2항에서 정한 관리계획을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제1항에 따른 관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 또는 수시로 점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점검을 위한 조치와 절차 등은 제60조제1항 및 제3항부터 제5항까지를 준용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관리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이행을 명할 수 있다.

<신 설>

④ 해상풍력발전사업자는 안전수역에서 해양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안전수역을 항행하는 선박의 소유자 또는 선장에게 관리계획에 따른 안전조치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의4(이행강제금)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해상풍력발전사업자에 대하여 해당 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매달 3천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다.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전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 알려주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때에는 이행강제금의 금액, 부과사유, 납부기한, 수납기관, 이의제기 방법 및 이의제기 기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힌 문서로 하여야 한다.

제51조(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발급 등) ① ~ ⑥ (생략) ⑦ 제6항에 따라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 속한 <u>모든 선박의</u> 선박안전관리증서의 효력도 정지된다. ⑧ 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유효기간의 <u>기산(起算) 방법</u> 등	④ <u>해양수산부장관은 제12조의 3제3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해상풍력발전사업자가 명령을 이행하면 새로운 이행강제금의 부과를 즉시 중지하되, 이미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징수하여야 한다.</u> ⑤ <u>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받은 자가 이행강제금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면 국세채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한다.</u> ⑥ <u>이행강제금의 부과 및 징수, 이의제기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u> 제51조(선박안전관리증서 등의 발급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 ----- ----- <u>선박의</u>----- -----. ⑧ ----- ----- <u>방법</u>
---	---

<u>에</u>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u>등에</u> 필요한 사항과 제6항 및 제7항에 따른 선박안전관리증서 또는 안전관리적합증서의 효력 정지에 관한 범위, 절차 등에----- -----.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 7. (생략) <u><신설></u> 8. ~ 24. (생략)	제114조(벌칙) ----- ----- ----- -----. 1. ~ 7. (현행과 같음) 8. 제12조의3제3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9. ~ 25. (현행 제8호부터 제24호까지와 같음)
제118조(과태료) ① 제35조를 위반하여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변조·훼손한 자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설></u> <u><신설></u>	제118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 ----- -----. 1. 제12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관리계획의 수립 및 제출을 하지 않은 자 2. 제12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관리계획을 이행하지 않은 자

<u><신 설></u> <u><신 설></u>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u><신 설></u> <u><신 설></u> 1. ~ 4. (생 략) ③ (생 략) ④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장의 전문적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한 자에게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⑤ · ⑥ (생 략)	3. 제35조를 위반하여 선박위치정보를 공개하거나 누설·변조·훼손한 자 4. 제45조제1항을 위반하여 선장의 전문적 판단을 방해하거나 간섭한 자 ② ----- ----- -----. 1. 제12조의2제2항에 따른 서류제출 등을 거짓이나 허위의 자료를 제출한 자 2. 제12조의2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변경된 관리계획을 제출하지 않은 자 3. ~ 6. (현행 제1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 ③ (현행과 같음) <u><삭 제></u> ④ · ⑤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	--